

輸出支援金融制度的 現況

曹 基 俊

〈韓國銀行資金部〉

I. 序

일반적으로 經濟成長과 輸出은 不可分의 交互關係가 있어 經濟成長이 輸出을 可能케 하는 原動力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輸出擴大는 輸出能力의 增大를 통하여 迂迴의으로 經濟發展에 寄與하면서 폭넓은 發展波及效果를 가져와 직접 經濟成長을 促進하기도 한다.

킨들버거(C. P. Kindleberger)는 貿易이 經濟成長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크게 세가지 類型 즉 先導部門(leading sector), 均衡化部門(balancing sector), 落後化部門(lagging sector)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이는 곧 貿易이 國民經濟에 대하여 先導의 役割, 均衡의 因子, 落後의 障礙要因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함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開發資源이 부족한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貿易 그중에서도 輸出增大는 經濟開發에 필요한 外貨需要를 自力으로 조달시켜 줄 수 있는 外貨稼得效果나 輸出增大에 의한 市場擴大效果(market expansion effect), 必要原資材 및 技術導入에 따른 模倣效果(imitation effect) 등을 통하여 開發에 需要되는 期間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試行錯誤過程을 겪지 않고도 올바른 開發方向을 設定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輸出의 經濟開發戰略으로서의 意義는 貿易의 利益(gains from trade)과 經濟開發을 同時의으로 追求하자는데 있으며 生産要素의 능률적인 再配分을 통하여 實質所得을 증가시키는 靜態的 利益(貿易利益)을 가져올 뿐 아니라 貿易乘數를 통하여 國民所得水準을 높이고 國

內貯蓄增加와 새로운 投資機會의 造出에 의한 成長의 原動力(engine of growth)이 되는 動態的 利益(成長促進의 利益)도 아울러 가져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輸入代替의 내지 內部指向的 開發政策이 國內市場 및 産業保護에 의하여 成長의 利益을 확보하려는 데 대하여 이와 같은 輸出主導型(export-led) 내지 外部指向型(outward-looking)政策의 合理性은 대체로 比較生産費原理에 입각한 特化와 그에 隨伴된 靜態的 利益 및 比較生産費條件에 따라 生産可能曲線을 右上向시키는 動態的 利益을 통하여 生産能力을 확대시킴으로써 開放體制의 유지와 國內市場條件의 不完全性を 排除하며 現代技術 및 經濟組織의 보급 전파가 生産性 增大라는 형태로 經濟發展을 촉진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經濟의 본격적인 開發戰略은 1962년부터 시작된 年次的인 經濟開發을 통하여 初期의 外資接近(foreign capital approach) 내지 內向的 輸入代替産業開發政策으로부터 서서히 貿易接近(trade approach) 또는 輸出中心의 外向的 工業化政策(export-led or outward-looking industrialization)의 段階를 밟으면서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2년부터 1967년까지의 初期에는 주로 輸入에 의존하고 있던 각종 主要消費財와 工產品의 일부를 國產으로 代替하기 위한 輸入代替産業의 新設 및 擴張에 重點을 둔 內向的 工業化政策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政策을 채택하게 된 背景을 보면 우선 1950年代에 걸쳐 산만하게 진행되어 온 消費財

工業中心의 輸入代替政策이 原資材 및 施設財의 輸入需要를 크게 增加시켜 輸入量은 急増된 반면 輸出은 상대적으로 不振狀態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慢性的인 國際收支 逆調가 經濟發展에 심각한 制約要因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輸入需要의 國內生産代替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消費財工業部門의 輸入代替政策은 그후 1966~71년에 걸친 第2次經濟開發計劃期間中에도 대체로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1960年代에 우리經濟의 資本財 및 中間財의 自給能力을 擴大하고 3次計劃期間中의 본격적인 重化學工業育成을 위한 基礎産業開發에 상당한 寄與를 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러한 消極的 政策만으로는 우리經濟를 본격적인 take-off 段階에까지 進入시키기에는 그 推進力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第2次5個年開發計劃에서부터는 持續的인 成長, 産業構造의 高度化, 國際收支의 改善 등 總力開發을 위한 突破口로 輸出主導型成長, 이른바 輸出第1主義의 外向的 開發戰略이 不可避하게 되었으며 經濟政策의 基本戰略도 輸出增大에 그 焦點을 맞추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당시 우리나라의 輸出産業은 아직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를 이룩할 수 있을 정도의 生産規模를 갖추지 못하였고 輸出對象國의 國內産業保護政策 등 外部與件으로 인해 國際競爭力이 매우 微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比較生産費原理에 의한 生産側面的 優位(technical gap trade) 보다는 주로 金融, 稅制, 補助金 등 광범위한 政府의 支援政策과 賃金隔差에 의한 輸出增大(low-wage trade)를 主武器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輸出第1主義戰略의 채택으로 1968年以來 우리나라의 輸出은 急速한 伸張勢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經濟成長에 대한 寄與度 또한 劃期的으로 增加하였고 輸出産業構造도 크게 高度化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우리나라 수출신장은 1962~76年間 年平均 42.8%에 달하였으며 輸出額은 1962年の 55百萬弗에서 今年中 대망의 100億弗線을 넘는 水準으로 飛躍的인 伸張을 보였다.

이에 따라 經濟成長 또한 急速히 進行되어 1962

~76年間 年平均成長率이 9.8%를 넘는 高度成長을 持續함으로써 1976年の 우리나라 經濟規模는 1960年代初에 비하여 4倍로 늘어났으며 1人當 GNP도 1961年の 83弗에서 1976년에는 700弗로 急激히 增加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계속적인 輸出增大와 그에 따르는 高度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産業誘因政策이 그간에 輸出主導型成長戰略에 알맞도록 樹立·施行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는 1960年代初부터 輸出進興施策을 강구하여 왔으며 1964年の 換率制度改革을 契機로 하여 諸般産業誘因政策을 本格的으로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에 알맞도록 整備하여 왔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輸出支援策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內國稅減免, 關稅減免, 輸出에 대한 優待金融에 따르는 金利補助와 電氣料 및 鐵道運賃 割引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輸出誘因策中 가장 核心은 어디까지나 輸出關聯業體에 대한 低利의 無制限資金支援制度인 輸出支援金融이라 볼 수 있는 本稿는 바로 이러한 輸出支援金融에 관하여 그 供給現況과 制度의 內容, 問題點 등을 論議해보고자 한다.

II. 輸出支援金融制度現況

우리나라의 輸出支援金融制度의 歷史는 1948年 1월에 처음 제정된 貿易信用制度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가 輸出增大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된 것은 1960년대초 이후라고 생각된다. 사실 輸出支援金融은 1960年代初 이후의 계속적인 輸出增大와 그에 따르는 새로운 필요에 대응하여 상당한 量的인 擴大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金利와 融資條件을 포함해서 制度上的 변화도 많았다.

최근 몇년간의 輸出支援金融實績을 <表-1>에서 보면 短期와 中·長期支援金融을 포함한 總輸出支援金融은 1972~76年間에 약 5倍 정도 증가하여 1976年末現在 8,93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總輸出支援金融은 1972년에는 民間部門 總國內與信額의 12% 수준에 있던 것이 1973年

<表-1>

輸出支援金融實績(年末殘額)

(單位：10億圓)

	1972	1973	1974	1975	1976
1. 短期輸出支援金融	106.8	222.2	359.5	462.9	582.5
輸 出 金 融	91.7	204.5	267.9	324.6	457.0
生産集荷資金	(36.3)	(71.1)	(79.7)	(114.1)	(183.8)
原資材購買資金	(14.8)	(41.3)	(47.3)	(118.8)	(107.2)
原資材輸入資金	(40.6)	(92.1)	(141.0)	(91.7)	(162.5)
完製品購買資金	(—)	(—)	(—)	(—)	(3.5)
外貨表示供給金融	9.1	10.2	50.2	97.0	75.7
農水産物輸出準備資金	6.1	7.6	41.4	41.4	49.7
2. 中長期輸出支援金融	72.2	155.1	247.0	290.1	311.3
中小企業育成輸出産業化資金	5.2	6.6	9.8	8.9	9.1
延拂輸出支援資金	1.4	4.0	4.3	29.9	56.2
外貨貸出(2條1號)	65.6	100.2	166.6	178.9	179.0
輸出産業設備資金	—	44.2	66.3	72.3	67.0
合 計 (I + II) (A)	179.1	377.3	606.5	753.0	893.8
民間部門國內與信 (B)	1,463.0	1,899.8	2,862.5	3,520.9	4,381.4
A/B (%)	12.2	19.9	21.2	21.4	20.4

資料：韓國銀行 統計年報

에는 약 20% 수준으로 증가, 그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總輸出支援金融中에는 生産集荷資金, 原資材購買資金, 原資材輸入資金 및 完製品購買資금을 포함하는 短期輸出金融이 상당히 큰 比重을 차지하며 이 輸出金融에다 外貨表示供給金融과 農水産物輸出準備資금을 加算한 全短期支援金融은 1972~75 年間に 總輸出支援金融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6 년에 와서 그 短期輸出金融의 比重은 65%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976 년에 들어 와서 中·長期輸出支援金融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된 데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中·長期輸出支援金融으로는 外貨貸出, 輸出産業設備資金, 延拂輸出支援資金과 中小企業育成輸出産業化資金 등이 있는데 그중 延拂輸出支援資金만이 1976 年中에 약간 증가했을 뿐 다른 資金은 별로 증가되지 아니하였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까지 보였다.

한편 年度別支援金融 증가 규모에 관한 指標로서 1972~76 年間の 限界輸出金融增加趨勢를 살펴볼 수 있다(<表-2> 參照). 1972~76 年間에

全體的으로 볼 때는 總輸出支援金融은 輸出增加率과 비슷한 增加率을 나타내어 輸出增加에 따르는 支援金融事情에 별 변화가 없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年度別 輸出增加에 따르는 限界金融支援은 1972 年の 弗當 72 圓에서 1975 년에는 300 圓 水準으로까지 계속 擴大되었으나 1976 년에 와서는 弗當 50 圓 수준으로 급격한 低下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1976 년에 限界金融支援의 급격한 低下는 短期金融이나 中·長期金融의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이것은 1976 년에 와서 輸出에 대한 支援金融事情이 1972 年보다 더惡化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976 년에 와서 이와 같이 限界輸出金融支援額이 급격히 低下된 原因은 역시 同年에 主要先進工業國家의 景氣回復 기미에 따라 수출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따라서 國內通貨量調節의 困難性으로 인해서 弗當 金融比率의 인하와 貸出期間 등 여러가지 조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한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輸出에 대한 限界金融比率의 이와 같은 低下에도 불구하고 1972~76 年間に 輸出支援金融에 따르는 金利補助效果가 弗當 8~9 圓 수준

	1972	1973	1974	1975	1976
1. 總 商 品 輸 出(百萬弗) ¹⁾	1,676	3,271	4,515	5,003	7,815
2. 輸 出 年 間 增 加(")	544	1,595	1,244	488	2,812
3. 短期輸出金融增加(10억원)	26.7	115.4	137.3	103.4	119.6
4. 中·長期輸出金融增加(")	15.1	82.9	91.9	43.1	21.2
5. 全輸出金融增加(")	41.9	198.2	229.2	146.5	140.8
6. 限界短期輸出金融增加(3/2원)	49	72	110	212	43
7. 限界中·長期輸出金融增加(4/2원)	28	52	74	83	7
8. 限界全輸出金融增加(5/2원)	77	124	184	300	50

資料 : <表-1> 및 韓銀刊 통계월보 1977. 4

註 : 1) 海外物品軍納을 包含함.

을 거의 유지하는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 그 이유는 金利補助效果 逐次 방식이 一般銀行貸出金利와 輸出優待金利간의 隔差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 바 低金利政策의 지속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金融與件을 고려할때 이는 별의미가 없다고 判斷된다.

또한 1972~76 년간에 우리나라 都賣物價는 우리의 主要貿易相對國의 것보다 30% 이상 더 급속하게 上昇했다. 그러나 그간에 우리의 公定換率은 약 24%밖에 平價切下하지 않았으므로 1976 年の 우리의 換率은 1972 年 平均에 비해서 약 7~8% 정도 過大評價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輸出이 계속 伸張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輸出支援金融의 效果가 컸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 바 특히 輸出金融은 그 制度上 國內與信規制에 관계 없이 거의 自動적으로 可用性이 보장되고 있음에 따라 緊縮金融이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輸出金融의 補助效果는 단순한 公金利隔差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輸出支援金融은 그 限界增加가 急低下되기는 했으나 換率의 非現實인 硬直化에도 불구하고 輸出을 계속 伸張시킬 수 있었던 唯一하고 중요한 誘因策이었다고 생각된다.

III. 現行 輸出支援金融制度의 內容

1. 短期輸出支援金融制度

1) 輸出金融制度

1961 年 2 月 金融通貨運營委員會에서 制定한

「輸出金融規程」에 의한 輸出金融은 輸出信用狀이 來到한 後 이를 根據로 輸出物資의 生産 集荷를 위한 資金인 稼得額金融에 限定되었으나 1972 年 3 월부터 同 制度가 대폭 改編됨으로써 現在의 輸出金融은 輸出信用狀에 의한 輸出은 물론 D/P, D/A 등 無信用狀方式의 輸出에 대하여서도 資金支援을 하며 輸出用原資材輸入資金, 國產原資材 生産 및 購買資金 그리고 一定한 輸出實績에 의한 輸出用原資材 및 完製品의 備蓄資金까지 包含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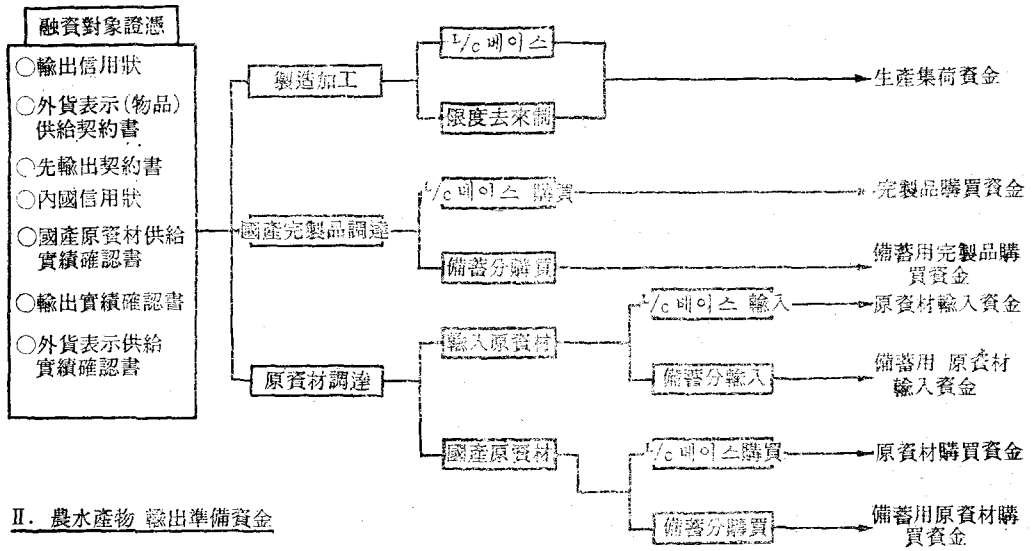
또한 最近 貿易業體의 大型化 및 輸出規模의 擴大에 따른 金融受惠件數의 增加와 信用狀의 短期化 趨勢로 融資業務의 簡素化 및 輸出 L/C 來到前 準備生産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1976 年 2 월부터 輸出金融商社別 限度去來制를 실시하여 對象業體에 대하여서는 信用狀과 관계 없이 融資되고 있으며 同年 3 월부터는 綜合貿易商社의 경우 1.5 個月 他社製品 輸出實績 範圍內에서 信用狀來到前에 備蓄用完製品購買를 위한 內國信用狀開設 및 同 어음 決済資金도 輸出金融으로 支援되고 있다.

가. 融資對象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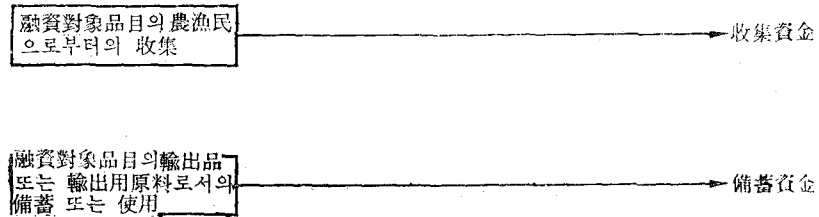
輸出金融을 融資받을 수 있는 融資對象者는 다음과 같다.

- ① 輸出信用狀을 받은 輸出業者
- ② 支給渡(D/P) 또는 引受渡(D/A) 條件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
- ③ 外國政府, 外國公共機關 또는 國際機構에 대하여 物品供給契約을 締結한 者. 다만 船船建

I. 輸出金融 및 外貨表示供給金融



II. 農水産物 輸出準備資金



<그림-1>

短期輸出支援金融體系

造供給의 경우에는 外國民間人과 契約를締結한 者도 融資對象이 될 수 있다.

- ④ 外國公共機關 또는 國際金融機關으로부터 받은 借款資金에 의한 國內事業에 대하여 物品供給契約를締結한 者. 다만 이 경우의 融資對象이 되는 事業은 關係借款條件에 따라 國際競爭入札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限定된다.
- ⑤ 內國信用狀을 받은 輸出用完製品 供給業者
- ⑥ 內國信用狀 또는 國產原資材供給實績確認書를 받은 輸出用原資材(단순한 賃加工 包含) 生産業者
- ⑦ 備蓄用 原資材를 輸入 또는 國內購買하고자 하는 者
- ⑧ 輸出實績確認書를 받은 輸出業者. 이 경우 해당자를 實績分金融受惠業體라고 하며 金融은 限度去來別로서 運營된다.
- ⑨ 政府가 指定한 綜合貿易商社로서 備蓄用完

製品를 國內購買하고자 하는 者. 이는 他社製品 輸出實績이 많은 綜合貿易商社에 대하여 信用狀 來到前에 備蓄用完製品購買를 위한 內國信用狀 開設을 許容하고 同 어음 決済資金을 支援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融資對象의 諸證憑條件

① 輸出信用狀의 條件

② 貨換信用狀(documentary L/C)일 것.

輸出金融의 融資對象으로서 貨換信用狀을 要求하고 있는 것은 輸出履行의 確實性이 保障되며 代金回收가 輸出物資에 의하여 擔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活鮮魚, 海苔 및 冷凍水産物은 漁場에서 漁獲하여 直接輸入商에게 引渡하고 貨物受取證(cargo receipt)만을 받는 無貨換輸出信用狀과, 國內에 設置되어 있는 保稅倉庫에 入庫시키고 保

稅倉庫入庫證明書を 받아 同 入庫證明書を 어음에 添附하여 買入하는 條件의 信用狀과 引渡場所가 國內인 無貨換信用狀 등은 貨換信用狀과 同一하게 취급하여 輸出金融의 대상이 된다.

⑤ 信用狀의 發行 또는 確認銀行이 우리나라 甲類外國換銀行의 海外支店, 甲類外國換銀行과 換去來契約를 締結한 銀行 또는 甲類外國銀行이 認定하는 銀行일 것

⑥ 決濟通貨가 財務部長官이 指定한 通貨로 表示된 것일 것. 다만 國際金融機構가 供與하는 資金으로 支給하는 輸出代金인 경우에는 「원」貨로 表示된 信用狀이라도 融資對象이 된다.

① 取消不能 信用狀(Irrevocable L/C) 일 것

② 信用狀金額 및 어음發行 許容金額이 輸出代金 金額을 包含하되 어음의 分割發行을 許容하는 條件의 信用狀에 있어서는 最初의 어음發行 許容金額이 當該 輸出代金の 80% 以上 일 것

③ 當該輸出에 關하여 當局의 許可, 承認, 또는 추천을 要하는 경우에는 同節次를 필한 것일 것

④ 前記 각 條件을 구비한 信用狀이라 할지라도 信用狀 文言中에 同 信用狀 全體로서의 條件履行에 中대한 影響을 미칠 만한 것으로 認定되는 特殊條項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輸出實現性과 代金回收의 確實性이 保障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內國信用狀의 條件

① 韓國銀行總裁가 定한 「內國信用狀 取扱規定」에 依據 正當히 發行된 것일 것

② 內國信用狀의 發行根據가 되는 輸出信用狀, 內國信用狀, 先輸出契約書, 外貨表示物品供給契約書는 關係規定에 정한 條件에 符合되는 것일 것

③ 先輸出契約書(D/P, D/A 輸出契約書) 및 外貨表示物品供給契約書의 條件

① 決濟通貨가 財務部長官이 指定한 通貨일 것. 다만 外貨表示物品供給契約書의 경우 國際金融機關이 供與하는 資金으로 支給하는 契約이거나 駐韓外國公共機關과 締結한 契約인 경우에는 「원」貨로 表示된 契約書라도 融資對象이 된다.

② 當該輸出에 關하여 필요한 當國의 許可, 承認, 認證 또는 추천을 받은 것일 것

③ 輸出代金 回收方式은 輸出業者가 輸出換어음을 發行하여 關係 船積書類를 첨부하여 外國換銀行을 통해서 推尋하는 方式이거나 輸出代金の 回收와 동시에 融資金의 回收가 保障되는 기타 方式에 의하여 決濟되는 것일 것

④ 輸出相對國의 貿易 및 外換關係法規上 당해 決濟方式에 의한 輸入 및 同 物資代金の 對外支給이 허용되는지의 與否와 輸出契約內容에 關한 海外公館長의 確認이 있는 것일 것

⑤ 先輸出契約書 및 外貨表示物品供給書는 다음과 같은 契約의 基本的인 事項이 明示되어 있는 것일 것

① 契約相對方

② 輸出品名 등급 수량 단가 금액

③ 代金決濟期日 및 方式

④ 引渡條件

⑤ 기타 계약에 必要한 事項

⑥ 輸出實績確認書 및 國產原資材供給實績確認書의 條件

① 業者가 미리 指定한 外國換銀行으로부터 發給된 것일 것

② 輸出實績確認書 또는 國產原資材供給實績確認書는 確認書의 發給申請 前月로부터 過去 3 個月間의 輸出實績 또는 國產原資材供給實績의 1.5 個月 範圍內에서 發給된 것일 것

③ 輸出實績確認書 發給의 기초가 되는 輸出實績은 輸出信用狀, 先輸出契約書에 의한 輸出代金入金實績(FOB 기준)과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發行된 어음의 買入實績에서 다음 項目의 輸出實績을 差減한 것일 것

① 輸出先受金入金額

② 完製品 內國信用狀이 開設된 수출신용장, 先輸出契約書 및 外貨表示物品供給契約書에 의한 輸出實績

③ 輸出入銀行資金에 의한 輸出實績

④ 輸出不履行額으로서 條件附猶豫判定을 받은 金額

⑤ 國產原資材供給實績確認書에 의하여 融資取扱될 수 있는 對象品目은 現在 輸入事前承認對象品目인 76 個 品目으로 限定되어 있으므로 對象品目에 대하여 發給된 것일 것

⑥ 實績確認書에 의한 最初融資는 實績確認書

發給日로부터 15日內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資金의 種類

輸出金融은 融資取扱上 便宜를 위하여 資金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分하고 있다.

① 生産集荷資金

輸出(또는 供給) 履行에 필요한 輸出信用狀, 先輸出契約書, 外貨表示物品供給契約書, 國產原資材供給實績確認書 및 輸出實績確認書 등의 稼得額部分에 대한 資金을 말한다. 이 資金의 用途는 原資材를 確保한 後 製造 加工하는데 所要되는 諸費用이나 輸出品資를 現金으로 購入하는데 필요한 資金을 支援하는 것이다.

76년 2월 2일부터 輸出金融 限度去來制가 導入 실시됨에 따라 이 資金은 信用狀「베이스」와 限度去來制로 區分되고 있다.

② 完製品購買資金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輸出用完製品을 國內에서 購買하는 資金을 말한다.

輸出用完製品이란 物件의 성질에 의한 區分이 아니고 最終 船積物品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定하여진다.

③ 備蓄用完製品購買資金

輸出信用狀, 先輸出契約書, 內國信用狀이 來到하기 以前에 備蓄用 完製品을 國內購買하기 위하여 內國信用狀開設을 허용하고 同 어음 決濟資金을 支援하는 것으로 他社製品의 輸出實績이 많은 綜合貿易商社에 한하여 7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④ 原資材 輸入資金

輸出信用狀 등에 의하여 輸出用原資材를 輸入하는데 소요되는 資金 즉 輸入信用狀을 開設한 후 輸入어음이 來到하였을 때 이를 決濟하기 위한 資金이다.

이 資金은 75년 1월부터 輸出金融의 特例規程인 「外貨獲得用 原資材 輸入金融의 運用에 관한 規程의 制定으로 外貨金融이 支援되어 왔으나 77년 8월부터는 外國銀行 國內支店을 제외한 外國換銀行은 종전대로 元貨金融으로 轉換되었다.

⑤ 備蓄用 原資材輸入資金

輸出信用狀 등을 받기 以前 段階에서 備蓄用 原資材를 輸入하는데 소요되는 資金을 말한다.

⑥ 原資材 購買資金

輸出(供給) 履行에 필요한 國產原資材를 國內에서 購買하는데 소요되는 資金을 말한다. 즉 輸出業者가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原資材를 購買하는 경우에 內國信用狀受惠者가 原資材를 引渡하고 代金回收을 위해 발행한 어음을 輸出業者가 決濟하기 위한 資金을 말한다.

⑦ 備蓄用 原資材購買資金

輸出信用狀 등이 來到하기 前 즉 輸出(供給)이 確定되기 以前에 國產原資材를 備蓄하는데 소요되는 資金이다.

라. 融資時期

輸出金融은 資金의 流用을 防止하고 資金의 성격에 따라 適期에 支援함으로써 金融의 效率性を 높이고자 資金의 種別에 따라 다음과 같이 融資時點을 달리하고 있다.

① 生産集荷資金

限度去來制金融을 除外하고는 製造·加工하기 위한 所要原資材의 確保가 確實하게 된 뒤에 融資된다. 즉 原資材를 輸入하는 경우에는 輸入認證書寫本, 國內購買의 경우에는 內國信用狀寫本 등을 提出하여야 融資가 可能하다.

② 原資材 輸入資金(備蓄用包含)

輸入어음 來到時 또는 船積書類引渡時에 融資가 이루어진다.

③ 原資材 購買資金 및 完製品 購買資金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發行된 어음을 決濟할 때 融資된다.

④ 備蓄用 原資材 또는 完製品의 再備蓄을 위한 融資는 原資材 또는 對應輸出(供給)이 確定된 後에 融資가 가능하다.

마. 融資期間

① 輸出金融의 融資期間은 當該 信用狀 또는 契約書의 船積 또는 引渡期日에 1週日을 加算한 期日 以內에서 運轉資金의 一回轉所要期間 등을 감안하여 輸出品目別로 差等を 둘 수 있게 되었다.

① 輸出金融의 長期 取扱이 필요한 品目에 대하여서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90日을 초과하여 融資期間을 설정할 수 있으며 資金의 회입

기간이 短期인 輸出品目은 韓國銀行 總裁가 「輸出金融 融資期間 審議會」의 諮問을 받아 90日 以內에서 融資期間을 定할 수 있다.

다만 完製品을 購買하기 위한 資金의 融資期間은 品目 區別 없이 30日을 超過할 수 없다.

현재 指定된 90日 超過 및 90日 以內 融資期間 該當 品目은 다음과 같다.

180日 品目 : 船舶, 鐵道車輛, 遠洋漁業, 外貨表示建設工事

150日 品目 : 産業用 機械, 自動車

90日 品目 : 電球, 도자기 및 점토, 事務 및 繪畫用品, 製糖, 假髮, 로프, 및 漁網, 電池, 調味料

③ 한편 天災地變, 船舶事情의 蹉跌 또는 輸入商 및 製品生産者의 豫想하지 못한 事情變更 등으로 위에서 설명한 용자 기간을 延長하여야 할 불가피한 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金融機關은 事前에 韓國銀行總裁의 承認을 얻어 融資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바. 融資金額

輸出金融의 融資金額은 각 資金別로 規定된 融資限度 範圍內일지라도 融資對象者의 生産 및 集荷能力, 過去輸出 및 供給實績, 現融資殘額 등을 참조하여 融資期日內에 輸出 또는 供給이 確實하게 된 部分에 대한 適正規模의 融資를 하여야 하며 長期輸出信用狀 등에 의하여 分割하여 輸出 또는 供給하는 경우에는 融資期日 등을 참조하여 1回轉所要資金範圍內에서 分割하여 融資함을 原則으로 한다.

限度去來制에 의한 融資內容은 別途項으로 설명키로 하고 우선 각 資金別 融資金額 查定方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生産·集荷資金

輸出金融의 受惠業體當 融資限度는 原則적으로 融資受惠分의 未船積殘額이 前年度 4個月 平均輸出實績(우량업체는 5個月 수출 실적) 範圍內를 適正基準으로 하고 있다.

生産集荷資金의 每件別 融資限度算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㉞ 輸出信用狀 등의 金額中에서 F.O.B 價格에 대하여 美貨 1「달러」當 420 원을 곱한 金額 範

圍內에서 融資된다. 단 77年 12月末까지는 잠정 조치로 美貨 1「달러」當 380 원을 곱한 金額 範圍內이다.

㉟ 「원」貨 信用狀 및 「원」貨 契約書에 대한 融資金額은 信用狀의 경우 FOB 價格을, 契約書의 경우는 契約金額을 融資取扱 當日의 對顧客電信換買入率로 각각 換算한 外貨金額을 基準으로 한다.

㉠ 內國信用狀 또는 國產原資材供給實績確認書에 의한 融資金額은 附記外貨金額에 대하여 美貨 1「달러」當 420 원(잠정 조치 77年 12月末까지 380 원)을 곱한 金額 範圍內에서 融資된다.

㉡ 前各項의 경우 所要原資材를 輸入하거나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國內에서 購買할 경우에는 當該原資材輸入(CIF 基準) 또는 購買額(內國信用狀 附記 外貨額)을 差減한 稼得外貨額을 融資對象으로 한다.

稼得外貨額의 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稼得外貨額 = 輸出 L/C 金額(FOB) - [原資材輸入額(CIF) + 原資材購買額(local L/C 附記 外貨額)]

그리고 75年 7月부터 시행되는 關稅還給制에 따른 金融支援措置로서 輸出業者가 國產原資材 使用時 追加負擔케 되는 關稅 및 內國消費稅 該當分을 生産集荷資金으로 支援토록 하고 있다.

② 完製品 購買資金

內國信用狀金額(附記外貨額)에 대하여 美貨 1「달러」當 420 원(잠정 조치 12月末 380 원)을 곱한 金額 範圍內이다.

備蓄用完製品購買資金을 融資받았을 경우에는 備蓄分을 差減한 不足額에 대하여 融資取扱된다.

③ 原資材輸入資金

原資材를 輸入하기 위한 資金의 融資는 輸入어음 外貨額에서 輸入信用狀開設擔保金積立率을 差減한 金額에 대하여 當日 對顧客 電信換 賣渡率을 곱한 金額 範圍內로 하되 同 融資金額은 輸入어음 外貨額에 대하여 美貨 1「달러」當 420 원(잠정 조치 380 원)을 곱한 金額을 超過할 수 없다.

④ 原資材購買資金

原資材를 國內購買하기 위한 資金의 融資는 內國信用狀金額에 대하여 美貨 1「달러」當 450 원(잠정 조치 410 원)을 곱한 金額 範圍內에서 融

資된다.

原資材購買資金의 融資比率이 餘他資金의 그것보다 높은 國產原資材의 活用을 促進하기 위한 것이다.

⑤ 備蓄用 原資材輸入 및 購買資金. 備蓄用 原資材輸入 및 購買資金의 融資限度는 當該 輸出品(國產原資材)의 申請前月로부터 過去 3個月間 또는 過去 1年間의 1/4 輸出(國產原資材供給) 實績 範圍內의 輸出(國內 供給) 履行에 소요되는 原資材로 되어 있다.

다만 同限度를 超過하는 경우에는 去來 外國換銀行을 통하여 韓國銀行總裁의 特認을 받아 融資받을 수 있다.

輸出實績을 超過하는 備蓄用原資材에 대한 輸入資金 또는 國內購買資金 承認申請은 輸入信用狀 또는 內國信用狀 開設前에 하여야 한다.

⑥ 備蓄用 完製品購買資金

備蓄用完製品을 國內購買하기 위한 資金의 融資는 翁자 申請 前日로부터 最近 3個月間의 完製品 內國信用狀이 開設된 輸出信用狀(先輸出契約書 및 外貨表示物品供給契約書包含)에 의한 輸出實績의 1/2 範圍內에서 美貨 1「달러」當 400 원(잠정 조치 360 원)을 곱한 金額 範圍內에서 融資된다.

사. 輸出金融限度去來制(實績分金融)

이 制度는 每 信用狀 件別로 融資取扱하던 輸出金融 融資方式을 止揚하고 過去 일정한 輸出實績을 근거로 한 輸出實績確認書를 받은 輸出業者에게 業體別融資限度를 設定하여 同 限度內에서는 1個의 主去來外國換銀行을 통하여 信用狀과 關係 없이 生産集荷資金에 限하여 自動적으로 融資가 可能토록 하는 制度로서 1976년 2월부터 실행되고 있다.

이 制度를 도입한 動機는 海外景氣變動으로 인한 信用狀의 短期化로 信用狀「베이스」만으로는 충분한 金融受惠가 곤란한 경우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輸出規模의 擴大에 따른 信用狀件數가 急增하는 추세에 있어 融資取扱 및 事後管理節次가 번잡하므로 이에 대하여 信用狀來到前金融支援과 融資節次의 대폭적인 簡素化를 期함으로써 輸出支援을 보다 強化하는데 있다.

① 對象業體의 選定

限度去來制 對象業體의 選定要件은 다음과 같다.

② 前年度 또는 最近 1年間의 輸出實績이 3千萬弗 以上인 業體로서

① 業體別 平均稼得率이 30% 以上일 것

② 過去 1년간 輸出支援金融 制裁 事實이 없을 것

③ 靑色 輸出業體로서

① 業體別 平均稼得率이 30% 以上일 것

② 過去 1年間 輸支援金融 制裁事實이 없을 것

③ 金融機關 適格業體 評價基準表에 依하여 選定된 優良業體 일 것

② 融資限度

신청 前月로부터 最近 3個月間 輸出實績의 1/2 範圍內에서 發給되는 「輸出實績 確認書」金額에 業體別 平均稼得率을 곱한 金額에 다시 弗當 420 원(잠정 조치 380 원)을 곱한 金額 範圍內로 한다. 業體別 平均稼得率은 主去來外國換銀行의 申請에 의하여 韓國銀行 取扱店이 業體의 輸出實績 및 主宗品目の 所要量證明書 등을 참작하여 每 3個月마다 查定한다.

③ 融資期間

融資期間은 實績分金融 融資限度의 有效期間 以內로 한다. 實績分金融 融資限度의 有效期日은 輸出實績確認書에 의한 最初 融資日로부터 90일로 한다.

韓銀總裁의 特認으로 融資期間의 延長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原融資期間內에 入金된 輸出(供給)代金を 回收하여야 하며 기취금된 融資金이 完濟될 때까지 新規 生産集荷資金을 融資取扱할 수 없다.

④ 融資金의 回收 및 事後管理

輸出實績確認書에 의한 融資는 限度去來制 方式에 의하여 취급되므로 融資期 滿了時에 一括하여 回收할 수 있다.

主去來外國換銀行은 既選定된 限度去來에 의한 金融受惠業體의 資格을 每 年度初에 前年度實績을 기준으로 再審査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對象業體의 選定을 取消하게 되며 6個月 以內에는 再選定

될 수 없다.

- ㉠ 輸出支援金融 制裁를 받는 경우
- ㉡ 實績分金融受惠分에 대한 對應輸出不履行事實이 2回以上 계속되는 경우
- ㉢ 業體選定時에 提出된 資料가 虛偽이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輸出支援金融을 받는 경우
- ㉣ 輸出實績 또는 輸出展望이 현저히 不良하거나 資格維持가 곤란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아. 金 利

모든 輸出金融 및 外貨表示供給金融은 融資期間 135일까지 優待金利인 年 8%가 適用되나 135일을 超過하거나 輸出不履行을 하는 경우에는 一般貸出金利(年 16%)가 適用된다.

從前에는 原資材輸入金融이 120일까지 優待金利인 LIBO Rate+1.5%가 適用되었으나 77년 8월 1일부터 元貨金融으로 轉換되면서 他輸出金融과 同一하게 되었다.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融資期間을 따로 정한 輸出品目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融資期間까지 當初 融資取扱時의 優待金利가 適用된다.

海外建設工事契約 경우는 6個月 超過 1年 以內인 것, 또 船舶建造輸出 및 鐵道車輛製作輸出은 180日 超過 270日 以內인 것에 대하여 金融機關 年 12%, 韓國銀行 年 10%의 利率을 適用한다.

對應輸出不履行分에 대해서는 一般貸出金利인 年 15.0%~16.0%를 適用하여 優待金利와의 利率差인 年 7~8% 該當額을 追徵한다. 그러나 融資期間 經過後 對象輸出 또는 供給이 履行된 分에 대하여서는 追徵利子를 還給받을 수 있다.

그리고 同種品目的 他輸出信用狀에 의하여 金融受惠 없이 輸出履行한 경우에는 追徵利子를 還給받을 수 있다.

자. 事後管理 및 制裁

輸出金融을 취급한 外國換銀行은 同 資金이 資金用途에 따라 輸出物資의 購買, 製造, 加工, 기타 輸出에 直接關聯되는 費用 및 原資材의 輸入 또는 購買資金以外的 他目的에 사용되지 않도록 管理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경우에 해당될 때는 制裁審査委員會

의 審議에 따라 一定期間 동안 新規 輸出支援金融을 融資받을 수 없게 된다.

① 豫定된 融資對象輸出額 또는 供給額의 90% 이상을 履行하지 않은 者로서 融資資金을 償還하였거나 延滯가 發生할 경우

② 備蓄用 原資材輸入 또는 購買資金의 融資를 받은 者로서 融資期間內에 對應輸出信用狀등에 對替시키지 못한 경우

③ 借主가 融資對象證憑, 關聯契約書, 物品受領證明書 기타 兪자 관련 書類를 偽造, 變造하거나 虛偽로 作成한 경우

④ 輸出不履行으로 制裁猶豫判定을 받은 경우

차. 輸出金融 融資節次

輸出金融의 融資節次를 要約 表示하면 다음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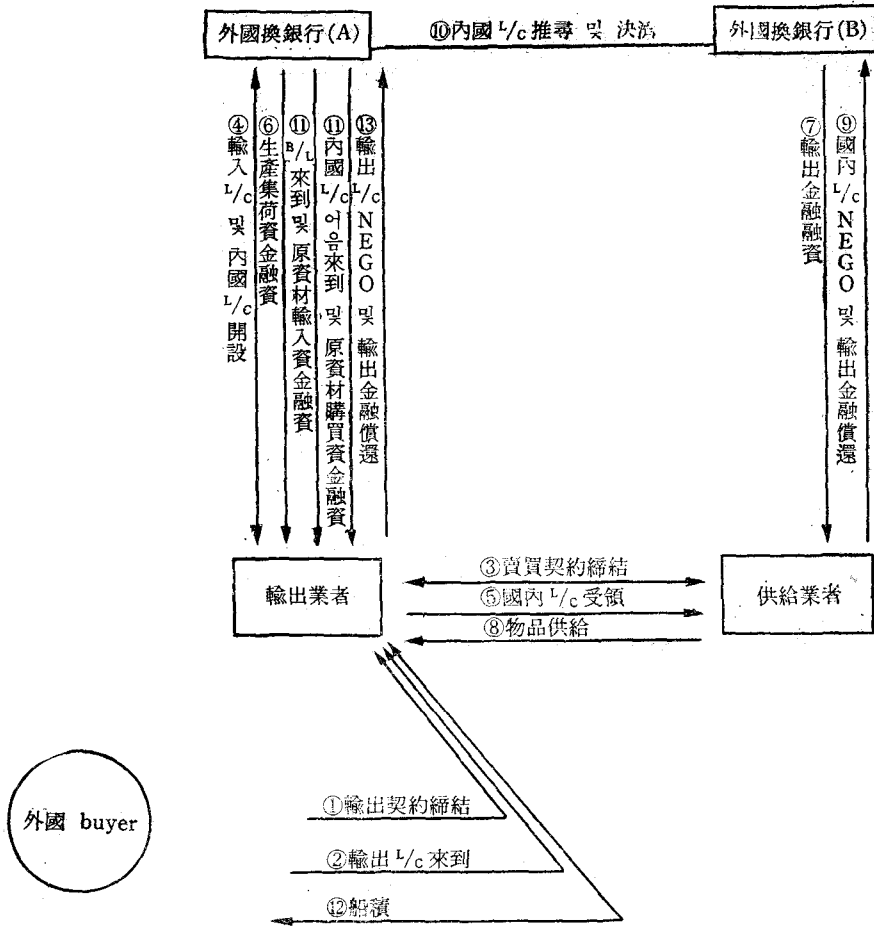
2) 外貨表示供給金融制度

外貨表示供給金融이라 함은 外貨로 代金を 決済하는 條件으로 國內外에서 外國政府 및 機關 또는 國際機構와 契約를 締結하고 物品을 供給하거나 工事を 受給施工하거나 用役을 供給하는 者에게 所要資金을 融資함으로써 外貨獲得에 기여케 할 目的으로 支援되는 金融이다.

外貨表示供給金融도 輸出金融과 同一하게 複合的 性質을 가지고 있다.

外貨表示供給金融과 輸出金融의 本質적 差異點은 첫째, 輸出金融이 원칙적으로 信用狀에 의한 金融임에 비하여 外貨表示供給金融은 契約書를 근거로 融資取扱되므로 去來 상대국이 外國政府, 外國機關, 國際機構 등으로 制限되고 둘째, 輸出金融은 物品의 輸出이 主가 되나 外貨表示供給金融은 建設 및 用役이 融資對象이 되며 셋째, 輸出金融에는 備蓄用 原資材輸入 및 購買資金이 認定되나 外貨表示供給金融에는 이것이 認定되지 않는다.

그러나 外貨表示供給金融에 있어서도 航空, 海上運送 및 船舶修理에 대해서는 限度去來制方式에 의한 實績分 金融이 認定된다.



<그림-2>

輸出金融融資節次

가. 融資對象者

融資對象者는 다음과 같이 制限되며 海外에서 이루어지는 外貨表示供給의 경우에는 外貨代金の 本國送金 또는 推尋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① 外國政府, 外國機關 및 國際機構에 대하여 工事を 受給, 施工하거나 用役契約을 締結한者, 다만 船舶修理, 外航航空 및 外船海上運送 또는 海外에서 履行되는 建設이나 用役인 경우에는 外國民間인과 契約을 締結한者도 融資대상 이 될 수 있다.

② 外國公共機關 또는 國際金融機關으로부터 받은 借款資金을 財源으로 하는 國內事業에 工事を 受給施工하거나 用役契約을 締結한者. 다만 이 경우에는 關係借款條件에 따라 國際競爭入札에 붙여진 경우에 한한다.

③ 前各號에 該當되는者中 韓國銀行總裁가 認定하는 業種으로서 外貨表示供給實績確認書를 받은者. 여기에 해당하는 業種으로는 外航航空, 外船海上運送과 船舶修理業 등이 있다.

나. 融資對象證憑의 條件

① 外貨表示供給契約書의 條件

② 期間內 契約履行이 確實視되는 것일 것

③ 契約遂行에 수반하여 政府의 許可, 承認 또는 確認을 要하는 경우 同節次를 마친 것일 것

④ 決濟通貨가 財務部長官이 指定한 通貨로 表示된 것일 것, 다만 國際金融機關이 供與하는 資金으로 支給하는 契約이거나 駐韓外國公共機關과 締結한 契約인 경우에는 元貨로 表示된 契約書라도 融資對象이 된다.

⑤ 外貨表示供給實績確認書의 條件

④ 業者가 미리 指定한 1個主去來銀行으로부터 發給된 것일 것

⑤ 發給 申請前月로부터 過去 3個月間의 融資 對象이 되는 外貨表示供給에 따라 發生한 外貨入金實績의 1/2 範圍內에서 發給된 것일 것, 다만 同 實績은 1個月 所要 運轉資金 및 申請 前月로부터 過去 3個月間의 外貨未受額의 月平均殘額 範圍를 超過할 수 없다.

③ 外貨表示供給金融受惠業體에 대하여 發給된 것일 것

實績分外貨表示供給金融 受惠業體의 資格 要件은 다음과 같다.

② 外航航空, 外航海上運送 또는 船舶修理業에 屬하는 業體일 것

① 該營業種과 關聯된 前年度外貨入金實績 또는 最近 1年間 入金實績이 1百萬弗 以上일 것

④ 外貨表示供給實績確認書에 의한 최초 融資는 確認書 發給日로부터 15日 以內에 이루어져야 하고 同 確認書의 發給은 1회에 限하며 分割하여 發給될 수 없다.

다. 融資金額

外貨表示供給金融은 輸出金融의 경우와 같이 용자 淸금상의 便宜를 위하여 資金의 용도에 따라 生産集荷資金, 原資材輸入資金 및 原資材購買資金으로 分類되며 資金의 種別에 따른 融資金額의 査定基準도 輸出金融과 同一하다.

다만 生産集荷資金에 있어서 海外에서 이루어지는 建設 및 用役供給契約일 경우에는 契約遂行에 필요한 現地 所要外貨額을 差減하고 本國에 送金이 確實視되는 外貨額 範圍內에서 融資取扱하되 當該 契約遂行에 직접 관련된 國內金融機關의 殘額을 차감한 範圍內에서 融資金額을 査定하여야 한다.

한편 長期供給契約에 의하여 分割供給을 하는 경우에는 分割供給期日 등을 감안하여 一回轉 所要資金 범위내에서 分割融資하여야 한다.

라. 融資期間

融資期間은 資金種別에 따라 다음 期日 이내로 하되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따로 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0日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外貨

表示建設工事に 한하여 180日까지 長期融資取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輸出金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不可避한 事由가 發生한 경우에는 사전에 韓銀總裁의 特認을 얻어 融資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① 生産集荷資金

外貨表示供給契約書 期日에 10日을 加算한 期日以內

② 原資材輸入 및 購買資金

輸入어음 來到日 또는 國產原資材引受日로부터 外貨表示供給契約書 期日에 10日을 加算한 期日以內

③ 實績分外貨表示供給金融

實績分外貨表示供給金融의 融資期間은 外貨表示供給實績確認書의 有效期間以內로 定하여 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90日로 되어 있다.

마. 融資金利

融資金利는 輸出金融의 경우와 동일하다. 예외적으로 180日까지 당초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業種은 外資表示建設工事に 한한다. 海外建設의 6個月 超過 1年以內 淸금분에 대해서는 金融機關 年 12%, 韓國銀行 年 10%의 金利가 적용된다.

3) 內國信用狀制度

원래 內國信用狀이란 輸出業者가 輸出履行에 필요한 完製品 또는 原資材를 國內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自己 앞으로 來到한 輸出信用狀을 見質擔保로 國內의 完製品 또는 原資材供給業者를 受惠者로 하여 開設하는 內國信用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內國信用狀制度는 輸出信用狀 뿐만 아니라 先輸出契約書, 外貨表示(物品)供給契約書 등을 근거로 內國信用狀을 開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過去輸出 또는 國內供給 實績을 근거로도 開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內國信用狀의 經濟的 機能은 輸出信用狀資材를 國內에서 조달케 함으로써 國產原資材의 活用을 촉진케 함과 동시에 供給者側面에서는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代金決済의 確實性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가. 內國信用狀의 開設

① 開設根據

內國信用狀의 開設根據는 輸出信用狀, 先輸出契約書, 外貨表示(物品)供給契約書, 內國信用狀 뿐만 아니라 過去 輸出 또는 供給實績도 開設 근거가 될 수 있어 備蓄購買를 위한 開設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② 開設限度

L/C「베이스」에 의한 限度는 所要原資材中 既備蓄分과 國產原資材 以外の 輸入原資材가 있을 경우에 既輸入認證分을 差減한 不足量 範圍內에서 開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備蓄購買를 위한 內國信用狀 開設限度는 申請前月로부터 過去 3個月間 또는 過去 1年의 $\frac{1}{4}$ 輸出(供給實績)에 該當하는 所要原資材 範圍內이다.

다만, 開設依頼人이 自己資金を 擔保로 하여 內國信用狀을 開設하는 경우에는 備蓄分을 포함하여 과거 1年間의 輸出 또는 供給實績에 해당하는 所要原資材 範圍內로 하고 있다.

完製品의 備蓄限度는 과거 3個月間의 他社製品輸出實績의 1/2 範圍內에서 綜合貿易商社가 同一系列企業이 아닌 업체에 대하여 開設할 수 있다.

③ 開設節次

開設銀行과 輸入認證銀行은 同一 銀行이어야 하며 다음의 書類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供給者發行物品賣渡 確約書

㉡ 所要量 證明書

㉢ 當該 輸出 또는 供給物資의 輸出 또는 供給實績證明書(備蓄購買 경우)

㉣ 輸出信用狀, 先輸出契約書, 外貨表示(物品)供給契約書 또는 內國信用狀(L/C 등「베이스」경우)

㉤ 內國信用狀 受惠者의 生産能力 保有를 立證하는 書類

內國信用狀 開設銀行은 輸出用原資材 輸入認證銀行과 同一銀行이어야 한다.

나. 內國信用狀의 條件

① 一般의 條件

「內國信用狀取扱規程」에 의하여 開設되는 內國信用狀은 取消不能信用狀이어야 한다.

② 引渡期日 및 有效期日

引渡期日은 근거가 되는 原輸出信用狀, 先輸出契約書, 外貨表示(物品)供給契約書 또는 原內國信用狀의 期日에 비추어 對應輸出 또는 物品供給이 원활히 이행되는 데 지장이 없는 範圍內에서 策定되어야 하고 有效期日은 前記 引渡期日에 10日을 加算한 期日以內로 하되 근거가 되는 輸出信用狀 등의 船積(또는 引渡)期日 以前이어야 한다.

다. 어음의 發行과 買入請求

① 어음의 發行

內國信用狀의 發行條件은 원칙적으로 內國信用狀의 受惠者가 同 內國信用狀에 의한 引渡條件에 따라 物品을 引渡한 후 즉시 物品代金 全額에 해당하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어음의 分割發行을 條件으로 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어음을 發行할 수 있는 金額은 당해 물품 대금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어음의 形式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은 開設依頼人을 支給人으로 하고 開設銀行을 支給場所로 하는 一覽支給換어음이어야 한다.

③ 어음의 買入請求

內國信用狀 受惠者는 다음 書類를 갖추어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買入을 外國換銀行에게 請求할 수 있다.

㉠ 物品受領證明書

㉡ 物品送狀

㉢ 供給者發行 税金計算書 寫本

라. 어음의 推尋

어음을 買入한 銀行은 開設銀行을 통해서 이를 推尋하여야 한다.

推尋書類는 內國信用狀交換室에서 交換되며 推尋代金의 決濟는 書類 交換日로부터 第4營業日에 이루어 진다.

4) 農水產物 輸出準備資金

農水產物은 生産 또는 收集하는데 季節的인 제

약을 많이 받게되는 反面輸出은 年中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農水産物의 盛出廻期와 非出廻期間의 需要 및 價格의 變動幅이 크다.

따라서 農水産物을 輸出하기 위하여 收集 또는 備蓄하는 者에게 低利의 資金을 圓滑히 支援해줌으로써 저렴한 價格으로 輸出을 可能케 하고 農水産部門의 長期投下 資金에 대한 負擔을 輕減시켜 輸出을 촉진시키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하겠다.

農水産 輸出準備資金은 이러한 季節性을 지닌 農水産物을 購入하기 위하여 輸出關聯業者에 低利의 金融을 支援해 주는 制度로서 1969年 9月 金通委에서 「農水産物 輸出準備資金 融資取扱規程」이 制定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 資金의 特色은 다음과 같다.

① 輸出信用狀이 來到하지 않은 狀態에서 融資支援하는 輸出準備資金이라는 점.

② 政府 其他 公共機關의 收買計劃에 依據 融資支援된다는 점.

③ 金融機關은 同 資金을 融資取扱하기전에 미리 韓國銀行과 協議해야 한다는 점.

④ 融資財源이 韓銀再割引資金 이외에 財政資金(農水産物輸出準備資金 融資基金) 및 金融機關自體資金으로 構成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財源別 融資比率은 다음과 같다.

a. 融資取扱機關이 農協 및 水協中央會인 경우는 基金貸與가 融資金額의 35% 以內이고 韓銀貸出이 50% 以內(단 해태 및 잠전에 대하여서는 90% 및 55%임)이고 金融機關自體資金이 15% 以上이다

b. 融資取扱機關이 外國換銀行(農協中央會는 除外)인 경우는 韓銀貸出이 90% 以內이고 金融機關貸出이 10% 以上이다.

가. 融資對象

① 對象品目

融資對象品目은 韓銀總裁가 農水産物 輸出準備資金 融資對象品目 審議會의 諮問을 거쳐 指定하는 바 現在 指定된 品目은 13개 品目이다.

(잠전, 해태, 천초, 양송이, 송이, 갈저 오징어, 툃, 부잠사, 통조림굴, 백삼, 미과제조용 참살, 통조림용 밤)

② 融資對象者

收集資金

融資對象品目을 農漁民으로부터 收集하는 者 備蓄資金

融資對象品目을 輸出品 또는 輸出用原資材로 備蓄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收集者와 農漁民으로부터 購入하는 輸出業者

나. 融資取扱要領

① 融資金額

收集資金 및 備蓄資金 모두 所要資金의 70% 以內에서 응자되고 있으나 韓銀總裁가 따로 認定하는 品目에 대해서는 80%까지 融資取扱할 수 있다.

② 融資取扱機關

收集資金은 農協中央會와 水協中央會가; 備蓄資金은 外國換銀行이 취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韓銀總裁는 品目別 取扱機關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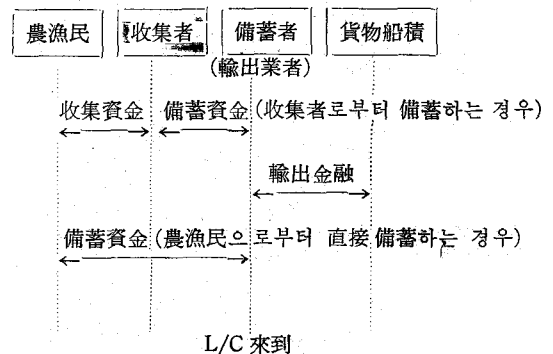
③ 融資期間

融資期間은 對象品目の 生産時期와 流過程程에 따라 韓銀總裁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品目別 融資期間은 대체로 90日~180日이다.

한편 融資期間을 超過하여 融資받으려면 韓銀總裁의 特認을 받아야 한다

④ 融資金利

金融機關貸出金利는 年 8%, 韓銀貸出金利는 年 3.5%이고, 財政資金 基金貸與額에 대하여서는 政府의 貸出金利 年 3.0%가 適用된다.



<그림-3> 農水産物輸出準備資金發生段階

⑤ 融資金의 回收

收集資金은 備蓄資金으로 代替決濟토록 되어 있으며 備蓄資金은 同 融資金과 關聯되는 輸出信用狀에 의한 輸出金融으로 代替決濟하여야 한다.

2. 中·長期輸出支援金融制度

1) 延拂輸出金融制度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라 延拂條件에 의한 거래가 일반적 慣行이 되고 있는데 中·長期延拂輸出金融制度는 이러한 資本財의 中·長期延拂去來方式에 의한 輸出을 促進시키기 위한 資金을 지원하는 金融이다.

延拂輸出金融은 6個月 이상 最長 10年 以內의 中·長期인 점과 去來條件上 一般金融機關이 일반적인 조건으로 資金을 欸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韓國輸出入銀行에서 融資取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延拂輸出金融을 받고자 하는 者는 사전에 輸出入銀行과 去來條件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豫備承認을 얻어야 한다.

同 金融制度는 「韓國輸出入銀行法」이 制定되어 韓國輸出入銀行에서 財政資金, 外換借入金, 投資金 등은 財源으로 용자 欸급되고 있으며 支援되는 資金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① 輸出資金
- ② 技術提供資金
- ③ 輸入資金
- ④ 海外 事業資金
- ⑤ 海外 投資資金
- ⑥ 主要資源開發 支援資金
- ⑦ 外國人, 外國政府,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資金
- ⑧ 對外經濟協力資金
- ⑨ 債務 保證

2) 外貨貸出

外貨貸出制度라 함은 國際收支의 改善 및 經濟開發에 필요한 外貨資金은 外貨獲得産業用 施設材, 輸入代替産業用 施設材 및 기타 經濟開發에

필요한 施設材를 輸入하려고 하는 者에게 所要資金을 外貨(美弗貨)로 融資해 주는 制度이다.

現行 外貨貸出制度는 外換保有事情, 外國換需給實績, 外貨貸出財源 調達 可能性 및 輸出與件 등을 감안하여 용자 대상, 融資限度 등을 每年伸縮의으로 運用하고 있다.

外貨貸出은 借主가 償還期間까지의 換率變動에 따른 換差損을 負擔하므로 元貨貸出에 비해 불리한 점도 있으나 貸出金利가 國際金利 基準으로 決定되므로 元貨貸出에 유리한 점도 있다.

外貨貸出制度를 요약하면 <表-3>과 같다.

3) 中小企業輸出産業化資金

中小企業의 輸出産業化 育成을 促進시키기 위한 金融으로서 財政資金과 金融轉換資金에 의한 中小企業育成資金의 一還으로 支援되고 있다.

가. 融資對象

融資對象者는 「中小企業銀行法」에 規定된 中小企業者로서 中小企業協同組合에 加入한 者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業體들이 해당된다.

- ① 前年度 輸出實績이 5萬弗 以上인 業體로서 輸出을 계속하는 業體
- ② 融資申請日 현재 輸出信用狀來到額, 輸出契約分 등의 合計額이 10萬弗 以上인 業體
- ③ 최근 1年以內에 新規商品을 개발한 者로서 同 製品을 輸出한 實績이 있고 신청일 현재 1萬弗 以上の 輸出信用狀來到額 또는 契約分 등이 있는 業體

나. 融資條件

- ① 融資金額
同一人에 대한 融資限度는 30百萬원이며 施設資金 既貸出殘額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 ② 資金用途
施設資金으로서 건물, 기계 및 그 附帶施設에 한하되 施設改修 및 補修資金을 포함한다.
- ③ 融資期間 및 回收
融資期日: 8年 以內
融資金回收: 据置期間 종료 후 均等分割回收
- ④ 融資金利

<表-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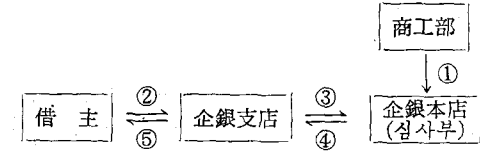
<외화 대출 제도 요약>

구 분	1 종	2 종	특별외화대출
1. 용자 취급 은행	국내 외국환 은행 및 외은 지점	외은 지점, 중소기업은행 및 공동 용자 (외은 80% 이상 국내 20% 이내)	국내 외국환 은행
2. 용자 대상	1. 외화 획득용 시설재 수입 대금 2. 연불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금 3. 군수 산업용 시설재 수입 대금 4. 장기 차관에 따른 시설재 도입을 위한 착수금 5. 전대차관 협조 용자 6. 수입 대체 및 경제개발 시설재 수입 대금	1. } 2. } 3. } 4. } 5. } 6. } 좌 동	1. 원면의 수입 대금 2. 기타 재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금
	7. 기술 용역 대가자금 8. 선박 건조용 기자재 수입 대금 9. 유우 및 육우의 수입대금 10. 기타 재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금	7. } 8. } 9. } 10. } 좌 동 11.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의 운영 자금 12. 임차 계약에 따른 착수금 13. 자가 발전용 발전기 수입 대금 14. 관광 호텔용 기자재 수입 대금	
3. 용자 기간	5년(2년 거치 포함) 단 시설재 및 선박 건조용 기자재는 7년, 군수 산업용 및 중화학 공업용 시설재는 10년	10년(4년 거치 포함)	1년(6개월 연장 가능)
4. 용자금리 (금통위 최고금리 15.5%)	LIBO Rate+1.75% (타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을 경우 0.25% 추가)	LIBO Rate+1.75% (타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을 경우 0.25% 추가)	LIBO Rate+1.25% (타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을 경우 0.25% 추가)
5. 용자 비율	80% 단 군수 산업용 시설재, 계획조선용 기자재, 유우 및 육우의 수입 대금, 장기 차관에 따른 시설재 도입을 위한 착수금, 기술 용역 대가 자금은 100%	80% 단 군수산업용 시설재, 계획조선용 기자재, 유우 및 육우의 수입 대금, 장기 차관에 따른 시설재 도입을 위한 착수금, 기술 용역 대가 자금은 100%	90%

融資金利는 13.5%를 적용한다.

다. 融資取扱節次

融資取扱節次는 <그림-4>와 같다.



- ① 支援要綱示達(毎年)
- ② 融資申請
- ③ 業體別 限度配定申請
- ④ " 限度配定通報
- ⑤ 貸出

<그림-4> 中小企業輸出産業化資金 融資節次

3. 國際金融

1) 現地金融(保證信用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經濟는 輸出規模가 擴大되고 市場多邊化가 이루어 짐에 따라 海外支社를 設置運營하는 貿易業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對外去來 확대 추세에 따라 國外에서 직접 성립되는 去來量도 크게 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現地金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現地金融의 필요성에 副應하기 위한 制度가 바로 保證信用狀制度(stand-by L/C)이다.

保證信用狀이란 國內外國換銀行이 國內商社의 海外支社나 在外 韓國法人이 필요로 하는 輸入資金이나 運轉資金을 現地에서 外貨로 融通하게 하거나 또는 外國에 있는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 등을 保證하는 一種의 外貨表示對外支給保證書를 말한다.

가. 保證信用狀의 開設範圍

保證信用狀의 開設範圍는 外國換管理規程 第2-21條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고 取扱銀行도 “甲類外國換銀行”으로 한정되어 있다.

나. 保證信用狀의 開設節次

保證信用狀의 開設時에는 同 對象이 되는 輸出

契約書, 工事案内書 등과 現地銀行이 融資를 하겠다는 內容의 融資意見書(letter of Intent)에 의하여 該當去來의 成立與否를 확인하고 事業計劃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保證信用狀의 回轉使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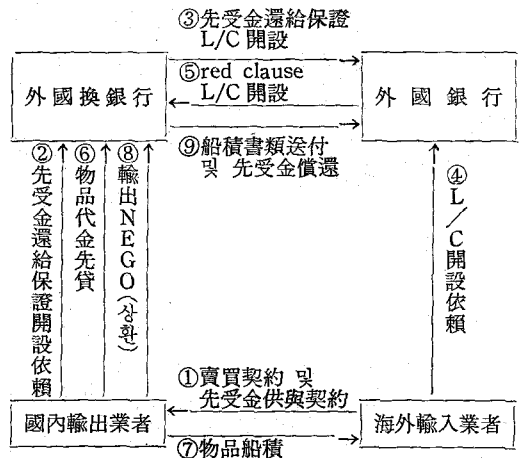
外國換管理規程 第2-21條에 규정한 本·支社間의 保證信用狀은 모두 回轉使用이 가능하며 回轉使用期間은 1年以內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輸出先受金

輸出商品의 生産 또는 集荷를 위한 資金支援을 위하여 輸入業者가 輸出商品의 船積以前에 物品代金의 金額 또는 一部를 輸出業者에게 前貸하는 資金이 輸出先受金이다.

信用狀開設銀行이 輸入業者의 의뢰에 따라 輸出商品의 船積以前이라도 物品代金を 信用狀上의 受益者에게 미리 支給할 수 있는 權限을 通知銀行에 부여하는 特殊條件을 明示한 red-clause L/C에 의하여 輸出業者는 輸出先受金を 受領하고 同 條件에 따라 輸出品을 船積함으로써 同 先受金を 償還하게 된다.

融資對象, 融資限度, 適用金利, 決済 등에 관하여서는 外國換管理規程 第7節 第9-22條~第9-28條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輸出先手金의 融資節次만을 간략히 要約해 보면 <그림-5>와 같다.



<그림-5> 輸出先受金領收 및 輸出節次

IV. 問題點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輸出支援金融制度의 歷史는 오래지만 現行制度의 基本적들이 잡힌 것은 1972년부터라고 생각된다. 1972년 이후 輸出金融制度는 부분적인 修正·補完은 있었으나 큰 변화 없이 운용되어 오다 1976年 말경에 대폭적인 改編을 가하여 금년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년초에 개편된 것은 주로 短期輸出金融과 관련된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① 從來에 90日로 거의 획일화되어 있던 融資期間을 輸出商品別로 差等화하고 ② 信用狀期日 연장에 따르는 135日까지의 融資期間 自動延長制度和 당초의 90日超過 特認制의 廢止 ③ 輸出金融限度去來制의 對象業體 範圍의 擴大 ④ 先輸出契約書에 대한 船積後金融制度의 廢止 ⑤ 國產原資材供給實績確認書 限度의 縮小調整 ⑥ 原資材備蓄金融限度 算定方法의 변경 ⑦ 外貨表示에 의한 物品納品の 輸出金融對象으로의 統合과 建設 및 用役業에 대한 外貨表示供給金融制度의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연초의 개편에서는 종래의 획일적인 融資期間을 輸出商品의 多樣化 추세에 맞게 商品性質에 따라 현실적으로 融資期間을 운용할 수 있게 한 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보겠다. 그 외에도 限度去來制 對象業體의 확대, 國產原資材供給實績確認書 限度 및 原資材備蓄金融限度 算定方法에 있어서의 최근 3個月間實績基準으로의 통일 등 制度上的 개선도 있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역시 개편의 기본 방향은 融資期間 自動延長制 및 당초 90日 超過特認制의 廢止, 先輸出契約書에 대한 船積後金融制度의 廢止, 國產原資材供給實績確認書 限度의 축소 조정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輸出金融의 流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서는 最低所要量 이상의 輸出金融擴大를 억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現行短期輸出金融은 주로 中央銀行의 再割引을 통해서 자금 조달되고 있으므로 輸出金融의 증대는 그만큼 本源通貨의 增大要因으로 작용할 것은 명백하다. 우리는 1976年 이후 계속적인 輸

出增大와 그에 따르는 外換保有額의 증가로 外換部門을 통한 通貨 팽창이 가속화되어 國內通貨管理上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輸出이 계속 증가되고 對外經常收支가 점차 黑字基調로 轉換됨에 따라 現行輸出金融을 축소하려는 압력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현재 輸出支援金融을 급격히 축소할 처지에 있지도 못하다. 換率이 硬直化되어 있는 현 여건하에서 輸出에 대한 중요하고 유일한 誘因策인 輸出支援金融을 축소하면 우리나라 輸出收益性의 惡化로 輸出增加率의 둔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國內金融市場構造가 實物經濟部間의 급속한 성장에 뒤져 落後되어 있는 현 여건하에서 換率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平價切下를 한다 하더라도 主要先進國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輸出金融을 무조건 축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을 계속추진해야 할 우리나라의 經濟與件으로 보아 輸出支援金融의 문제는 하나의 政策的 「딜렘마」에 처했다고 판단된다.

V. 改善方向

輸出支援金融은 金融政策手段인 質的金融統制로서 選別的 産業金融調節政策이다. 輸出支援金融政策은 그 자체가 目的이 아니고 國家의 基本目標達成을 위해 動員되고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輸出金融支援體制는 持續的 經濟開發과 成長, 産業構造의 改編 및 國際收支의 改善이라는 基本目標達成을 直接間接으로 支援하는 主要手段으로서의 效率性提高를 위해 부단히 整備되고 改善되고 補完되어져야 할 것인 바 특히 다음 事項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1. 短期輸出支援金融制度의 改善

1) 輸出戰略品에 대한 現行 支援體制의 矛盾除去

近年에 이르러 船舶建造輸出, 海外建設輸出,

鐵道車輛 등은 重化學工業育成施策 및 政府의 적극적 海外進出政策에 힘입어 括目할 만한 輸出伸張率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品目들은 性格上 製造工程期間의 長期, 輸出契約 및 引渡條件의 까다로움 및 工事現場이 海外라는 점 등에서 여타 一般輸出商品과는 判이한 條件下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製造工程期間 및 資金 一回轉所期間을 평균 3個月로 가정하여 査定한 現行 輸出支援金融規程에 의거 用者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업종은 輸出入銀行의 支援對象이지만 현재의 輸出入銀行의 資金支援能力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現行 短期 金融支援規程과는 별도로 이들 업종에 대한 운영 자금 支援方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現行 輸出支援金融規程의 체제 정비

貿易規模의 확대에 따라 現行 輸出支援金融規程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改正·補完되어 왔으나 아직도 複雜·多岐·矛盾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外貨表示供給金融規程은 당초에 融資對象이 되는 輸出契約書의 契約相對方을 外國政府·국제 기구 등 外國의 公共機關에 한정하여 代金回收가 확실한 分에 대해서만 用者 지원하기 위해 輸出金融規程과는 별도로 운용키 위해 제정된 것이나 현재에는 그간의 수차에 걸친 改正으로 앞서 언급한 선박건조수출 또는 海外建設 등

을 본규정에 포함시켜 輸出金融規程의 일종의 便法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諸規程의 統廢合 및 再整備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金融支援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3) 內國信用狀制度의 運營改善

內國信用狀制度의 근본 취지는 物品供給代金에 대한 支給保證과 함께 輸出物品의 國內調達圓滑化를 촉진하기 위한 金融支援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독특한 制度이다. 그런데 현재 輸出業界에서는 金融支援이 필요 없는 自己資金에 의한 경우에도 內國信用狀을 구태여 이용함으로써 附帶費用의 증가, 人的, 時間的 浪費를 초래하며 나아가 金融의 效率性까지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國內에서 輸出物品 또는 原資材가 輸出業者에게 공급될 경우 內國信用狀制度에 의한 入金의 경우에만 商易行政面에서 輸出實績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輸出業界는 金融支援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輸出實績을 위해 이 制度를 이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金融의 효율성 제고 및 業界의 負擔輕減이라는 면에서 이의 是正措置가 商易「사이드」에서 조속히 강구되어야만 한다고 본다.